

유엔 메커니즘을 활용한 한국 대체복무제도 개선

레이첼 브렛

2023년 11월

세 가지 종류의 유엔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권 조약 기구 (준사법절차)

두 가지 주요 기능:¹

조약 이행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몇 년에 한 번씩 접수하고 검토함.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불만 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결정함.

2.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임명 및 보고는 정치적이지만 수임자에 따라 실제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일 수 있음)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만들어지고 임명되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함.

개별 전문가 또는 소규모 그룹

모든 국가를 포괄하는 특정 주제별 - 조약 당사국일 필요 없음²

위임된 권한 내에서 국가들을 방문하고, 개별 사건 및 문제를 다룰 수 있음.

3. 보편적 정례검토 (정치적)

유엔 인권이사회 절차

모든 국가와 모든 문제를 다룸.

4.5년마다 국가별 보고 및 검토, 보고서 작성

다른 국가는 질문 및 권고

1 몇 가지 다른 절차도 있지만 이 목적과 무관하다.

2 몇 가지 국가별 특별 절차도 있지만 이 목적과 무관하다.

1. 조약 기구

대한민국은 모든 주요 유엔 인권 조약의 당사국이며 다음과 같은 개별 진정 절차의 당사국이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 여성 차별 철폐 협약
- 고문 방지 위원회
- 장애인 권리 위원회

각 조약에 따라 국가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 최종견해를 채택한다. 모든 경우에 NGO는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든 **개별 진정** 절차에서 관련 위원회에서 사건을 고려하기 전에 피해를 입은 특정 개인(또는 둘 이상)이 있어야 하며, 이 개인은 모든 국내 구제 수단을 다 사용했거나 효과적인 국내 구제 수단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조약기구의 활동은 자유권 위원회(2023년 11월 채택된 최종견해를 참조(아래))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 일련의 성공적인 개별 사례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음 보고 기간은 2029년에 돌아온다.

군 복무와 비교한 대체복무의 기간, 의사결정 기구, 비종교인 지원자에 대한 고려/인정 부족 및 기타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진정을 추후 제기할 수 있지만, 우선 국내 법원을 이용해야 한다.

다른 조약 기구들도 국가 보고 및 개별 진정 절차를 통해 자유권 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기와 관련하여 자유권 위원회의 업무를 보완하고 문제를 고려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다른 조약 기구를 활용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아동 권리 위원회(CRC):

2024년 12월에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보고 절차를 위해 CRC에 정보를 제출하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대체복무자의 자녀는 그 자체로나 징집병의 자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가? 아동권리협약 제 2 조는 부모의 신분에 근거하여 자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9 조(3) 자녀가 별거 중인 부모와 정기적으로 직접 연락을 유지할 권리 - 대체복무 중 방문 및 통신, 전화 등의 제한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어린이에게는 시간이 다르다 - 어린 아이에게 3년은 매우 긴 시간이다. 다시 말하지만, 자녀가 있는 징집병이 다른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부모의 신분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CEDAW)

2024년 5월에 고려될 예정이며, 현재 국가가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보고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데 있어 NGO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결혼한 병역거부자와 관련된 재정적 영향은 어떠한가? 대체복무를 할 때 급여를 받는가? 결혼한 병역거부자의 아내는 수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가? 대체복무를 하는 동안 병역거부자가 결혼할 수 있는가? 징집병도 같은 상황인가? 다르다면 차별이고, 동일하다면 기간의 차이로 인해 병역거부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역시 차별이다. 대체복무자는 결혼할 수 있는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

대체복무 수행이 병역거부자의 경제적 권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 3년의 대체복무 기간이 병역거부자의 고용 및 직업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대체복무 장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정된 병역거부자의 절반 정도만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3년의 대체복무를 시작하기 위해 3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그들과 그들의 업무 및 기타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장애인 권리 위원회(CRPD)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3년간의 대체 복무 경험이 병역거부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가 있는 병역거부자와 징집병은 다르게 대우받는가? 대체복무 경험이 기존의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는가?

2. 보편적 정례 검토 – 한국은 2023 년에 검토되었으므로 몇 년 동안은 다시 검토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때까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미래를 위해 염두에 둘 가치가 있다. 사전 정보 제출, 다른 정부를 상대로 한 문제제기 및 권고 로비 등이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

3. 특별절차: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사례를 제출할 수 있음.

개별 사례에 대해 국내 구제 수단을 모두 소진할 필요가 없음.

특별절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보고 과정에서 개별 사건이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 조약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특별절차에 정보를 제출할 수 있음.

종교 및 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려하며, 특히 종교적 병역 거부자와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또는 기타 종교를 가진 병역거부자 사이의 인정 차별을 다룬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 또는 투옥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내 구제 수단을 모두 소진할 필요 없이 즉시 이들에게 사건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자유권 위원회에도 제출할 수 있다.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3 년 동안 거주해야 하고, 외출이 제한되며,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것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특별보고관 –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고문,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 특별보고관 – 대체복무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로 간주될 수 있는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옹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있는가?

건강권 특별보고관 – 3 년의 대체복무가 병역거부자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건강 문제가 있는 대체복무자와 건강 문제가 있는 군 복무자 사이에 차별 문제가 존재하는가?

2023년 11월 3일, 대한민국에 대한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견해 CCPR/C/KOR/CO/5

양심적 병역거부

51. 위원회는 2019년 12월 27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복무(18~21개월)에 비해 차별적이고 징벌적이라는 점과 대체복무가 교정시설에서의 복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청구가 계류 중인 대체복무 거부자들과 군 복무 중인 군인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석방되고 범죄 기록이 말소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이전 권고 및 견해(17, 18 항)와 달리 이들에 대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52. 당사국은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교정시설 이외의 장소로 대체복무를 확대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군 복무자와의 차별적 처우를 없애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현역 군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이전 권고와 견해에 따라,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석방되어 범죄 기록이 말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UPR

보편적 정례검토

보편적 정례검토 실무 그룹 보고서*

대한민국 (A/HRC/53/11) 2023년 3월 23일

139.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늦어도 제 53차 인권이사회 회기까지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139.34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인권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법률을 검토할 것을 고려한다(동티모르).

139.48 순수 민간 성격이고,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성격과 비용 면에서 비징벌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군 복무와 유사한 기간의 대체 민간 복무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과 관행을 검토한다(코스타리카).

139.68 사상, 신념,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대체복무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말라위).

139.76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재능과 기술의 범위를 고려하여 군 복무와 비슷한 기간 동안 다양한 복무 옵션을 통해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캐나다).

139.77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투옥되거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고, 병역거부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순수 민간 성격의 비차별적인 대안이 제공되도록 보장한다(스페인).

139.78 국제 기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슬로바키아).

139.79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 복무와 유사한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의 적절한 비징벌적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추가되는 기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파나마).

139.81 수감된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범죄 기록을 말소하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아르헨티나).

139.82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순수 민간 성격의 적절한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키프로스).

139.83 구금 중인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하고 범죄 기록을 말소하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룩셈부르크).

139.8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을 종식하고, 민간 대체복무가 징벌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민간 통제 하에 있도록 보장한다(우루과이).

139.85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군 복무의 민간 대안을 개선한다(에스토니아).

139.86 민간 통제 하에 군 복무와 유사한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의 비징벌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옵션을 제공하고, 불합리한 지체 없이 대체복무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호주).

139.87 대체복무 기간을 줄이고 복무 가능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차별 없이 순수 민간 성격의 비징벌적인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크로아티아).

139.88 징벌적이지 않고 민간 성격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폴란드).

대한민국 정부의 UPR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

A/HRC/53/11/Add.1(2023년 6월 13일)에 권고안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다.

81 번, 83 번, 84 번의 앞부분은 "이미 이행 중"이라고 답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참조함(noted)"이라고 답했다. UPR에서 "참조함"은 해당 항목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